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484
----------	-------

발의연월일 : 2026. 9. 21.

발 의 자 : 이소희·김은혜·강승규
이달희·권영세·김 건
조정훈·윤용근·안철수
임이자·김재섭·윤상현
엄태영·이만희·권영진
김승수·이종욱·최은석
이종배·조승환·조배숙
주호영 의원(2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면서,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스마트기기의 사용을 인정하고 있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제1형 당뇨가 있는 학생의 치료용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교육현장에서 이에 대한 해석상 혼란이 있고, 장애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또는 질병 치료 목적의 스마트기기 사용 여부가 학교의 장과 교원의 판단에 따라 달

라질 우려가 있음.

이에 치료용 보조기기로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및 치료용 보조기기 사용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허용 여부와 관계없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0조의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학생의”를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의”로 한다.

2. 의학적 치료 또는 모니터링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3. 교육의 목적 또는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①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이하 “스마트기기”라 한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u>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의5(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 제한 등) ① ----- ----- ----- ----- -----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u>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u>	2. <u>의학적 치료 또는 모니터링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u>
3. <u>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u>	3. <u>교육의 목적 또는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u>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u>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u> 교내 스마트기기의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② ----- <u>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생의</u> -----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